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1
----------	------

제출연월일: 2022. 7. 11.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중구야구장이 조성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의 및 명칭에 야구장을 추가하고 사용료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정의에 야구장 추가(안 제2조)

나.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야구장 추가(별표 1)

다. 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야구장 추가(별표 2 ~ 별표 3)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5. 참고자료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4574호, 2022. 6. 14.)

라. 입법예고: 2022. 6. 7. ~ 6. 28.(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구장·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수영장**”을 “**축구장·야구장·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수영장**”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제2조의2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요시설	비고
원 학 정	성동1길 15-15	사대 및 과녁	
성안생활체육공원	함월1길 145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십리대밭축구장	태화동 800번지	인조잔디축구장 및 부대시설	
유곡테니스장	다전로 385-1	테니스장, 화장실, 관리실 등	
함월구민운동장	성동1길 2	인조잔디축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실 등	
중구수영장, 중구테니스장	종가로 305	수영장(25m×8레인), 테니스장(3면)	
중구다목적구장	약사동 936 일원	인조잔디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중구야구장	성안동 631 일원	인조잔디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평 일	토요일·공휴일	비 고
유곡,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당		10,000		3시간 기준
	월회원	개인	30,000(40,000)		1인기준 (야간조명포함)
		클럽	20,000		
중구테니스장	코트당	주간	20,000		3시간기준 (야간조명포함)
		야간	30,000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 중구다목적구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50,000	80,000	2시간 기준
중구수영장	1일 입장료	성인	5,000		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청소년	4,500		
		어린이	4,000		
	월회원	성인	60,000		
		청소년	55,000		
		어린이	50,000		
중구야구장	체육경기		80,000 (100,000)	120,000 (150,000)	3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160,000	240,000	3시간 기준

1. 괄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단체 포함) 사용시 요금임
2.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예약 행사 및 대회는 우선 사용한다.
3. 한국석유공사 임직원(가족포함)이 중구수영장 및 중구테니스장 이용시에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할인한다.
4. 수영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를 100분의 10 할인한다.
5. 중구야구장의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 사용 요금은 중구민외 참여 인원이 1/2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단위 : 원)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3]

부대시설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세부시설	사 용 료	비 고
테니스장	조명시설	5,000	종목별 코트당 1회(1시간) 기준
함월구민운동장 및 중구다목적구장	조명시설	20,000	2시간 기준
	전기사용	10,000	2시간 기준
중구야구장	조명시설	30,000	3시간 기준
	전기사용	15,000	3시간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u>축구장·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수영장</u>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2. ~ 7. (생략)</p> <p>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u>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 ----- ----- <u>축구장·야구장·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수영장</u> ----- -----.</p> <p>2. ~ 7.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3. 작성자

- 소 속: 혁신교육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정강호
- 연락처: (052)290-3671